2020년도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

2020년도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□ 회의일시 : 2020. 9. 11(금) 14:00~14:50

□ 회의장소 : 양재 플래그원 1317호

□ 심의결과

1. 규칙개정안건
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차기 위원회 심의	부결
4건	4건	-	-	-	-

2. 일반의결안건 · 보고안건

일반의결안건					보고안건	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 결	안건수	원안 접수
-	-	-	-	-	1건	1건

붙 임 : 1.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2. 보고사항 결과

2020. 9. 11.

위원장	한국전력거래소	조영탁
위 원	산업통상자원부	이옥헌
	숭실대학교	송경빈
	법무법인 화우	류병채
	한국전력거래소	양성배
	한국전력공사	박형덕
	한국동서발전	이승현
	GS EPS	이재덕

천송희/20200914152150

15276005041600064554

【붙임 1】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4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4-1호
개최일시	2020년 9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☐ **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마련 및 규정 신설** ○ 참여대상 자원, 시험 및 등록, 예측값 제출방법, 제출양식, 정산 등 ☐ **대상 자원 :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중개사업자** ○ 태양광, 풍력을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설비*, 20MW초과 개별 발전기 및 중개 사업자가 모집한 예측형 집합자원 *)바이오나 소수력과 통합가능하나 정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☐ **참여조건 : 등록시험을 통과한 대상 자원** ○ 등록시험 통과요건 : 1개월 평균 예측오차율 ≤ 10% ☐ **정산금과 페널티** ○ 정산금 지급기준 : 이용률 10%이상 & 예측 오차율 8% 이하 – 지급액 : 8%이하(3원/KWh), 6%이하(4원/KWh) ○ 페널티 : 3개월 평균 오차율이 10% 초과시 참여대상 자원에서 제외 ☐ **예측자료의 활용 :** 3개월 평균 오차율이 8%이하 시 운영발전계획에 활용
주요 토의내용	☐ **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9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직인)

한송희/20200914152150
15276005041600064554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보조서비스 정산기준 일부 개정(안)

제4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4-2호
개최일시	2020년 9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**□ 발전입찰 자료와 운영발전계획수립용 자료의 일원화** ○ 발전단 기준의 운영발전계획수립용 자료제출을 폐지하고, 송전단 기준의 발전입찰로 입찰 일원화 ○ 입찰자료는 가격결정발전계획과 운영발전계획 수립용으로 구분·관리 **□ 제출자료 체계화** ○ 발전입찰시 에너지 및 예비력 입찰을 구분 ○ 발전기 기동정지(committment)와 급전자료(dispatch) 구분 ○ 복합발전기는 CC모드와 GT모드 구분하여 입찰 **□ 입찰항목 신설 및 변경** ○ 발전기 기동특성자료 신설(열간·온간·냉간 기동소요시간, 최소발전용량 도달시간, GT 기동 우선순위, GT단독운전 여부 등) ○ AGC/GF 상하한 신설, 증감발율 4개구간 → 단일화 등 **□ 주간전력수급전망용 자료제출 신설** ○ 정확한 주간전력수급전망을 위해 주간자료 제출 규정 신설
주요 토의내용	**□ 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**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9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직인)

한송희/20200914152150

15276005041600064554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국내탄 발전기 연료비용 산정방법 개정(안)

제4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4-3호
개최일시	2020년 9월 11일 14:00
제 안 자	한국동서발전
제안내용	□ **국내탄발전기의 연료비용 산정 시 조정열량단가 규정을 삭제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열량단가 산정** ○ "연료의 열량단가"산정기준 개정(제1.1.2조 16호) – 국내탄발전기 열량단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산정 ○ "조정열량단가"개정 삭제 (별표1, 별표23)
주요 토의내용	□ **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9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서명)

한송희/20200914152150

15276005041600064554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연료전지 및 신재생 발전기 관련 규칙개정(안)

제4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4-4호
개최일시	2020년 9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**□ 연료전지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규정 신설·보완** ○ 연료전지발전기에 대한 발전설비 출력 감시, 평가 및 제어 등에 대한 세부 관리규정을 풍력·태양광 발전기 수준으로 신설, 연료전지발전기의 제어성능 요구조건 신설, 연료전지 발전기 특성자료의 제출과 실시간 정보의 원격취득 요건 마련, 연료전지발전기의 긴급정지 통보 규정 신설, 연료전지 발전기의 발전계획과 정지계획 제출 규정 신설 **□ 신재생 발전설비 신뢰도 기준 신설·보완** ○ 풍력발전기의 순시전압저하 시 유지성능을 풍력·태양광·연료전지 발전기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 및 기준 보완,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 유지성능, 무효전력 공급능력, 무효전력 제어성능, 유효전력 제어성능 유지기준 신설 및 보완 **□ 시행일 및 적용대상** ○ 2020.10.1.부터 시행. 단, 연료전지 발전기 정비계획 및 발전계획 제출 관련 규정은 관련 세부절차 및 전산시스템 도입 후부터 시행 ○ 송·배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력수급계약(PPA)을 신청하는 신설분에 대하여 적용
주요 토의내용	**□ 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**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9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

한송희/20200914152150
15276005041600064554

【붙임 2】

보고사항 결과

보 고 내 용	보 고 결 과
▪ (제1호) 전차(제20-3차) 규칙개정위원회 결과보고	○ 원안 접수

한송희/20200914152150

15276005041600064554